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6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8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2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6월 20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7조)
 -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구청장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
 -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원신청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지원결정에 대해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지원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 안 제8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하고 규정함.
- 참고로 서울시 9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 안 제8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1)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대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중에 공중위생업 관련자는 위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6.10.14.>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